

산업계 화학물질 분류표시 이행 돕는다... 표시정보 자동 작성 프로그램 공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의 유해성 분류와 용기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혼합물 분류 표시 프로그램을 11월 22일부터 공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일물질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을 고시하고 있으나, 국내 유통되는 유해화학물질 대부분은 혼합물 형태로 사용되어 성분 물질의 종류와 함량에 따라 제각기 달라지는 분류 및 표시사항을 산업체가 직접 계산하여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관련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혼합물 분류표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개별물질에 대한 유해 정보를 입력하면 혼합물에 대한 분류표시가 자동으로 표출되어 산업체 종사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누리집(kreach.me.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6월에 공개한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제도 소개 영상과 올해 11월 혼합물 분류 표시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 동영상도 관련 업계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에 개발된 혼합물 분류 표시 프로그램이 산업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화학물질로부터 사람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 전달과 함께 산업계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2. 혼합물 분류표시 프로그램 제작 추진 현황.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책임자	과 장	서정관 (032-560-7160)
		담당자	사무관	두용균 (032-560-7211)
		담당자	연구사	송 학 (032-560-7236)



○ 화학물질

- 원소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정의임

○ 단일물질

- 단일한 한 종류의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물질

○ 혼합물

-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섞여있는 물질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 고시한 것(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함)
- 제한물질: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유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 고시한 것 (그 용도로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됨)
- 금지물질: 유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고시한 것 (모든 용도로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정의임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물리적위험성, 건강유해성, 환경유해성 3가지 범주로 나누고 범주 내에서 고유한 특성에 따라 유해위험 등급(Class)으로 분류하며 각 유해위험 등급 안에서 심각성에 따라 유해위험 구분(Category)으로 분류함
- 항목별 위험성 및 유해성은 분류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 등으로 표시하여 유해성을 전달함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적 이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화학물질 신고와 등록, 등록면제, 중점관리물질 신고, 선임 해임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화학물질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함(CAS번호, 영문명, 국문명, 고유번호(기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암 돌연변이성 물질, 사고대비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량, 분류표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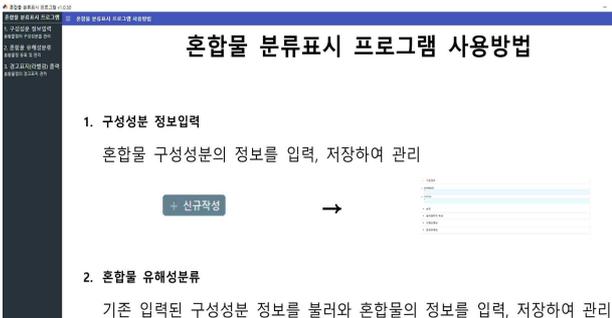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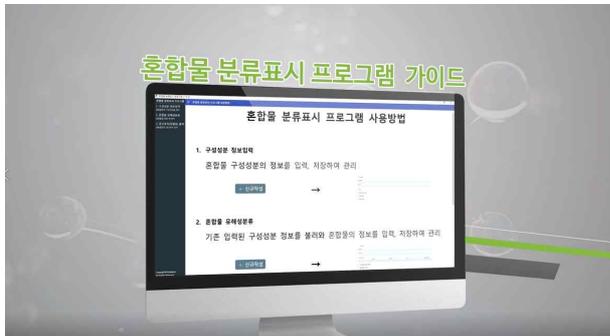
□ 개요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체에서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류표시 제도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산업체에서 다루는 제품은 주로 단일물질이 아닌 혼합물질로 구성되어 있음
- 다양한 품목으로 인해 명확하게 유해성을 분류 및 표시하기 어려운 화학물질에 대해 업체 담당자 등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혼합물 분류표시 프로그램 제공

□ 주요 내용

- 개발된 혼합물 분류표시 프로그램 검증 및 개선사항 도출('23년 3~9월)
- 산업체가 취급하는 혼합물의 성격을 바탕으로 예시 작성 ('23년 7~10월)
- 실제 분류표시 프로그램 사용 과정을 교육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산업체에 배포 ('23년 9~11월)

첨부 : 혼합물 분류표시 프로그램 및 동영상 캡처

	
<p>혼합물 분류표시 프로그램</p>	
	
<p>혼합물 분류표시 프로그램 가이드 동영상</p>	